

장 애 인 증 명 서

1. 증명서 발급기관

① 상 호		②사업자등록번호					-			-				
③ 대표자(성명)														
④ 소 재 지														

2. 소득자 (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)

⑤ 성 명		⑥ 주민등록번호								-				
⑦ 주 소														

3. 장애인

⑧성 명		⑨주민등록번호								-				
⑩ 소득자와의 관계	의	⑪장애예상기간 (또는 장애기간)	[] 영구 (. . .부터) [] 비영구(. . .부터 . . .까지)											
⑫장 애 내 용	제 호	⑬용 도	소득공제 신청용											

위 사람은 「소득세법」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
(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)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진 료 자 (서명 또는 인)

발 행 자 (서명 또는 인)

귀 하

작 성 방 법

1. ⑪ 장애예상기간(또는 장애기간)란: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.
2. ⑫ 장애내용란: 다음 중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.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사람: 1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: 2
- 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1)부터 10)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·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: 3